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33340 판결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김영재, 김형규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2.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2. 23. 피고로부터 소형선망 어업허가권(최소 9.77톤에서 최대 15톤)을 양도보상금 6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21. 3.경 이 사건 어업허가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업허가권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선의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계약한 어업권이 제3자에게 매도가 되는 때 그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 어업권이 매각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그 계약금을 곧바로 반환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불확정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기한 사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조건이 피고가 어업허가권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언제까지나 원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변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어업허가권의 매각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인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원고가 매각의 실현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허가권의 매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 스스로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 원고에게 수차례 반환을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④ 특히 이 사건 어업허가권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어업허가권이라는 매매 대상의 특성이나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매각을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채무의 지급조건(기한)인 ‘어업허가권 매각’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어업허가권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시점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의 이행기한은 변론종결 시점인 2022. 12. 21.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